학칙 개정(안)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	비고
제28조(교육과정) ① ~ ② <생 략> ③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. ④ ~ ⑥ <생 략>	제28조(교육과정) ① ~ ② <생 략> ③ 학점단위로 이수결과를 조합하여 역량을 인정하는 나노디그리,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, 이수한 학습자들에게 역량을 인정하는 자격증 또는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. ④ ~ ⑥ <생 략>	● 나노,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추가
제29조(학점이수)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, 1학기 15시간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. 다만 실험, 실습, 실기는 1학기 30시간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,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5시간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. ② 학생은 제1학기와 2학기의 경우 **12학점 이상을**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**10학점**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.	**제29조(학점이수)** ① ----------. ② ---------- **10학점 이상을** ---------- **10학점** ----------.	●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 조정
제43조(졸업 및 수료) ① <생 략> 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2년제 과정 70학점, 3년제 과정 11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 졸업학점 중 교양 및 전공 최소 이수학점 범위는 아래의 표와 같다. 다만, 편입학자와 재입학자, 전과자는 교양 및 전공 최소 이수학점에 인정학점을 포함한다.	제43조(졸업 및 수료) ① <생 략> ② ----------**68학점, 3년제 과정 108학점**----------.	● 졸업 취득학점 조정